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6차 법제사법위원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형사재판 불출석에 대한 특례 신설〉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205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3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    | 6 |
| 3. 관계기관 의견 .....       | 9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2. 17.
3. 회 부 일 : 2025. 2. 1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미확인으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판이 길어지고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도 형사 장기미제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음.

한편,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사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법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 제2항 신설),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3조제4항 신설),

위 규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고(제23조 단서 삭제 및 안 제23조제5항 신설), 위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① -- |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 <신 설>

----- . <단서 삭제>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  
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  
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

<신 설>

<신 설>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 본문  
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  
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  
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  
(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  
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

수 있고, 이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  
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사형, 무  
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  
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  
-----  
-----  
-----  
-----  
-----  
-----  
-----  
-----  
-----

|                                         |                                   |
|-----------------------------------------|-----------------------------------|
| 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br>② ~ ⑦ (생략) | -----<br>-----.<br>② ~ ⑦ (현행과 같음) |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와 같은 공시송달 재판뿐 아니라, 제1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등에 불출석한 때에도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심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형사재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첫째, 형사소송에서 불출석재판을 확대하면 피고인의 신병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으나, 해당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가치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은 소재확인 불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재판의 특례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피고인의 의도적인 불출석 등을 포괄하는 규정인바,

이 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sup>1)</sup> 특례법은 일반법의 체계와 질서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다는 점<sup>2)</sup>에 비추어볼 때 이 법에 불출석 형사재판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는 것이 법률의 체계정합성에 있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제277조<sup>3)</sup> 등에서 불출석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민사재판의 경우 이 법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148조<sup>4)</sup>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78면.

3)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등에서 당사자가 불출석한 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셋째, 개정안의 실익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가능하고,<sup>5)</sup>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궐석재판이 가능하므로,<sup>6)</sup> 이 법에 불출석재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넷째, 안 제23조의2는 개정안의 불출석재판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진술 없는 재판과 판결선

- 
- 4)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5)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6)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피고인은 재심뿐 아니라 상소권 회복청구<sup>7)</sup>로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불출석재판 사유의 확대가 형사판결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의도적으로 도망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진행 단계나 피고인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조화롭게 국가가 정당한 형벌권을 행사할 필요성 등이 있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개정안의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에서 불출석 당사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61 |

7)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